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자금’ 의 정의 중 ‘숙식비’ 에 관한 사항 구체화〉
■ 이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591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정현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6. 29.
3. 회부연월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자금’을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분하여 실행하고 있음.

그러나 타 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상당수는 대학 기숙사의 저조한 수용률로 인하여 원룸 등 민간 임차 주거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주택임차료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상당한 주거비 부담을 지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학자금의 정의에 주거비 관련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비용이 학자금 대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대학생의 주거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이에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명시함으로써 대학생의 주거비에 대하여도 학자금대출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생의 고등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학자금’에 관한 정의 중 ‘숙식비’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학자금”이란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u>숙식비</u> ·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제3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 ----- <u>숙식비(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한다)</u> ----- ----- -----.
4. ~ 13. (생략)	4. ~ 13.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원)생의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학자금대출을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분하고 있으며¹⁾, ‘학자금’을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라고 규정하고 있음.

등록금대출은 대학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등 등록금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금은 대학 수납계좌로 직접 지급됨. 반면, 생활비대출은 대학(원)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교재비·교통비 등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학기당 200만원 한도에서 학생 본인의 계좌로 지급됨.

<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구분 >

	등록금대출	생활비대출
지원 대상	입학금·수업료 등 등록금	숙식비·교재비·교통비 등 생활비
대출 한도	해당 학기 등록금 소요액	학기당 200만원
지급 방식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
사용 방식	등록금 납부에 사용	학업에 필요한 생활비로 사용

-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0조(대출 종류 및 한도)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나누어 실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금대출은 심소요액 전액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생활비대출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실제 생활비대출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생활비대출 실행 사유 중 자취·기숙사 등 주거비용이 1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비가 대학생의 주요 생활비 지출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음.

< 생활비대출 실행 사유 (자료: 교육부) >

구분	1순위 (A)	2순위 (B)	3순위 (C)	응답자 수 (Ax3)+(Bx2)+C	비율
식비, 교통비 등 기본생활 비용	20,267	6,649	2,411	76,510	40.8%
자취, 기숙사 등 주거 비용	4,706	8,783	2,879	34,563	18.4%
교재, 실습비 등 학업 수행 비용	1,676	4,981	8,135	23,125	12.3%
학업 지원 서비스(GPT, 태블릿 등) 비용	988	1,971	2,620	9,526	5.1%
공모전, 자격증 등 자기 계발 비용	318	1,339	1,706	5,338	2.8%
학업 외 취미생활 등에 필요한 비용	660	2,160	5,784	12,084	6.4%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한 생활비 보충	1,957	5,031	5,860	21,793	11.7%
기타	668	326	1,845	4,501	2.5%
전체	31,240	31,240	31,240	187,440	100.0%

- 한편, 현행법은 생활비의 항목으로 ‘숙식비’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범위는 정하고 있지 않아, 기숙사비·주택임차료·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주거 관련 비용이 이에 포함되는지가 법률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대학생의 생활비에서 주거비가 주요 지출 항목 중 하나인 현실을 반영하여, ‘숙식비’에 기숙사비·주택임차료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생활비대출의 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제도에서도 생활비대출은 학생 본인의 계좌로 지급되고 사용 용도가 별도로 제한되어 있지 않아 기숙사비·월세 등 주거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새로운 대출대상을 추가하거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도 운영에 미치는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도 ‘숙식비’에 기숙사비·주택임차료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재정 의원안, 의안번호 제2123806호)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제22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이재정 의원안, 의안번호 제2208078호)이 발의되어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임. 이번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주거 관련 비용으로 명시하고 있음.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대학생의 주거비에 대한 학자금대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도 생활비대출을 기숙사비 등 주거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93